
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

(설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4. 11.

발의자 : 설훈 · 김민기 · 김한정

김병관 · 김태년 · 백혜련

안민석 · 조정식 · 권칠승

정재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,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등에 관하여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,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과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.

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5007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5007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(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⑥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법률 제15007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(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⑧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